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양만식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II.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기능강화

1. 「일본판 금융빅뱅」 이후의 금융시스템개혁의 경위
2.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현황
3. 금융상품거래법의 구성과 목적
4.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실시

III. 결론

I. 서론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저축을 통한 자금을 기본으로 하여, 대출을 행하는 소위 간접금융이 금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후의 경제부흥과 그 후의 고도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리스크를 은행에 집중한다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현실화된 것은 1990년대의 일본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진 버블

경제 붕괴 후의 심각한 불량채권문제이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문제(서브프라임·론)는, 유럽 및 아시아 제국은 물론이고 금융·자본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각국이 연대하여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와 금융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서, 일본에서도 이에 솔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1996년의 「일본판 빅뱅(금융시스템개혁)」은 자유, 공정, 국제화라는 3가지 원칙하에, 은행의 불량채권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사태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자본시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동경시장을 뉴욕·런던과 나란히 할 수 있는 3대 국제금융센터로서 부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개혁은 커다란 성과를 올려, 현재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는 다른 선진 제국과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심한 금융·자본시장에서는, 어떤 시점에서는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바로 시장실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제도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룰의 해석이나 적용이라는 운용면에서 유연성이 결여되면, 제도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염려도 있다. 금융·자본시장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그 운용형태에 관한 부단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안정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초고령화 사회에서 세계수준의 금융·자본시장을 확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기능강화

1. 「일본판 금융빅뱅」 이후의 금융시스템개혁의 경위

「일본판 금융빅뱅」하에서는, 1998년에 제정된 “금융시스템개혁을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금융시스템개혁법)을 비롯한 법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은행 자체에서의 투자신탁판매의 허용(解禁), 증권회사에 대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주식매매의 위탁수수료의 완전자율화 등이 실현되었다. 「일본판 금융빅뱅」의 개혁기간은 2000년 말로써 종료되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각종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2002년에는 ‘금융재생프로그램’, 2004년에는 ‘금융개혁프로그램’이 책정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투자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투자가보호법제(소위, 투자서비스법제)을 구축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금융상품거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2.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현황

금융·자본시장은, 자금의 최종적인 출자자인 개인이나 개인의 부탁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 등과 자금조달자인 기업, 기타의 발행자가 만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참여자는 국내의 투자가나 발행자는 물론이고, 해외의 투자가나 발행자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안심하고 용이하게 참가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신뢰받은 시장을 구축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판 빅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은, 금융·자본시장의 발전기초가 되는 제도적 구조를 확립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2007년 12월 현재 약 1,500조 엔에 상당하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원금보증의 저축금에 그치고 있는 등, 금융구조의 대폭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관계자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시장이나 시장의 중개자인 증권회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외국기업의 상장수를 보면, 2007년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3사에 불과하고, 동 시기에 싱가포르의 시장에는 42사를 상장유치하고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 있는 46개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평가한 런던의 글로벌금융센터 인덱스에서는 동경시장의 순위가 9위였으며, 2대금융센터인 런던, 뉴욕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홍콩,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순위에 이르고 있다(아사히신문, 2008년 3월 2일).

3. 금융상품거래법의 구성과 목적

2006년 “증권거래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및 “증권거래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시행에수반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이 성립, 공포되었다. 이 2개의 법률¹⁾은 금융심의회금융분과회 제1부회의 보고 “투자서비스법을 위해”를 거쳐,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광범위한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횡단적인 법제로서 증권거래법을 개편하여 「금융상품거래법」,

1) 2개의 법률에 의해 개폐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①폐지된 법률: 외국증권업자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과 관련된 투자고문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저당증권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신물거래법, ②개정된 주요 법률: 증권거래법,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 상공조합중앙금고법, 금융기관의신탁업무의겸영등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협동조합에의한금융사업에관한법률, 상품거래소법, 신용금고법, 장기신용은행법, 노동금고법, 은행법, 부동산특정공동사업법, 보험업법, 농림중앙금고법, 신탁업법, 상품투자외관련된사업의규제에관한법률, 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표 1] 일본판 금융빅뱅 이후에 있어서의 금융·자본시장을 둘러싼 개혁경위

1996년	- 금융시스템개혁구상(일본판 금융빅뱅)을 공표
1998년	- 개정 외환관리법 시행(내외자본거래 등의 자유화, 외국환업무의 완전자유화) - 금융시스템개혁법 제정
2000년	- 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금융상품판매법) 제정
2001년	- 증권시장의 구조개혁프로그램책정
2002년	- 증권시장의 개혁촉진프로그램책정 - 금융재생프로그램책정
2003년	- 증권거래법개정(증권중개업제도의 창설, 협동조직금융기관에서의 서면중개의 허용, 투자일임업무 등의 겸업 등과 관련된 규제의 적정화, 증권회사 등의 주요주주규칙의 정비 등)
2004년	- 증권거래법 등의 일부 개정(은행 등에 의한 증권중개업무의 허용, 과징금제도의 도입, 공시제도의 합리화, 조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범위의 확대, 최선집행의무의 도입) - 금융개혁프로그램 책정
2005년	- 증권거래법 일부개정(공개매입제도의 적용범위의 개선, 모회사정보의 공시제도 도입, 외국회사 등의 영문에 의한 계속공시제도 도입, 계속공시의무위반과 관련된 과징금제도의 창설)
2006년	- 금융상품거래법의 성립(소위 투자서비스법제의 구축, 공시제도의 확충,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강화, 부정거래 등에 관한 엄정한 대처)
2007년	- 금융·자본시장경쟁력 강화계획책정
2008년	-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개정

소위 투자서비스법으로 하는 등의 정비를 행함으로써 이용자보호규칙의 철저와 이용자의 편의향상, 저축으로부터 투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확보 및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2가지의 법률로 구축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횡단적인 법제(이하, 금융상품거래법제)의 취지·목적은 ‘이용자(투자자)’, ‘시장’ 및 ‘국제화’ 라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제의 내용은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는, 소위 투자서비스규제의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집단투자구조(펀드)의 포괄정의와 파생거래의 범위확대 등에 의한 규제대상상품·서비스의 확대(포괄화·횡단화), 이에 수반되는 업자의 업무범위의 확대(포괄화), 투자자의 속성이나 업무유형에 따른 규제의 차이화(유연화)이다. 둘째로는 공시제도의 준비로서, 구체적으로는 4분기 공시에 관해 법정화,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강화, 공개매입제도 및 대량보유제도의 개선 등이다. 셋째로는 거래의 자율규제업무의 적정한 운영확보이며, 넷째로는 벌칙의 강화, 소위 허위과장매입을 통한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을 강화하였다. 즉 금융상품거래법제는 ‘포괄화·횡단화’, ‘유연화’, ‘공정화·투명화’ 및 ‘엄격화’ 를 중심 키워드로 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목적달성을 위한 방책
 - ㉠ 기업내용 등의 공시제도를 정비할 것
 - ㉡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는 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 금융상품거래소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할 것
- ② 직접적인 목적
 -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금융상품 등의 거래 등을 공정하게 할 것
 - ㉡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것
 - ㉢ 자본시장 기능의 충분한 발휘에 의한 금융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할 것
- ③ 최종적인 목적
 -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
 - ㉡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

이 금융상품거래법제는, 증권거래법상의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 및 투자자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최종적인 목적의 취지를 승계하고 있다는 점, 금융상품거래법제의 개요가 목적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기업내용 등의 공시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금융상품거래업을 행하는 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상품거래소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는 것 등”과 같이 주요한 제도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의 자본시장이 증권거래법 제정 당시에 비교하여 크게 성장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자본시장 기능의 충분한 발휘에 의한 금융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서, 소위 시장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실시

국제적으로 시장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기 위한 기대에서, ① 신뢰와 활력이 있는 시장의 구축, ② 금융서비스업의 활력과 경쟁을 촉진하는 비즈니스환경의 정비, ③ 보다 좋은 규제환경의 실현, ④ 시장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관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1) 신뢰와 활력이 있는 시장구축

세계 주요 금융센터 간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보다 매력 있는 시장으로 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외의 투자자나 자금조

달자 등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확실하고 편리성이 높은 시장인프라를 정비하고, 그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층 높은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 다양한 자금운용·조달기회의 제공

일본의 자본시장을 보다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있어서의 취급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자를 염두에 둔 거래시장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자금운용·조달기회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거래소에서의 취급상품의 다양화

여러 외국에서는 ETF(상장지수투자신탁 등)나 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해 상품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또한 거래소 간의 국제적인 경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거래소는 거래소 간의 제휴 등에 의해 거래소 그룹으로 하여 주식, 채권, 금융파생상품은 물론, 상품파생상품(commodity derivative)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일본의 거래소 또는 그 그룹 등에서도, 제외국의 거래소 등과 동일하게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상품구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정비 등을 행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리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ETF의 다양화

ETF는 투자자에게 있어서,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한 투자수단이다. 또한 비상장 투자신탁과 비교하면, 거래소 시장에서 시장가격에 의한 적시적인 거래를 기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ETF의 다양화를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

(i) 주가지수연동형 ETF의 다양화

다양한 지수를 대상으로 한 ETF를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투자신탁법) 관계정부령을 개정하고, 고시지정에 의한 대상지수의 개별열거방식을 폐지함과 동시에 적절한 가격형성이나 추가조작방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대상이 되는 주가지수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등의 개선을 하였다.

(ii) 주식 이외의 상장유가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의 해금

투자신탁법에 있어서의 현물거출형 ETF로 주식에 한정하였지만, 해외의 거래



소의 경우에는 다양한 현물거출형 ETF가 상장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8년 투자신탁법관계정부령 등을 개정,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는 상장유가증권 등에 관해 현물거출형의 ETF의 투자대상으로 해금하였다.²⁾

(iii) 상품선물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ETF의 해금

상품현물, 선물 등에 대한 직접 투자나 현물교환 등을 행하는 투자신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08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투자신탁법 및 관계정부령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러한 투자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관한 상품투자와 관련된 사업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를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㉞ 거래소의 상호편승을 위한 구조의 정비

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거래소 간의 자본제휴를 통한 그룹화 등으로, 주식·채권이나 금융파생상품에 더하여, 상품파생상품까지 모두 구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정비할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는 금상품거래법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상품파생상품거래는 상품거래소법의 규정대상으로 하는 2개의 법제구조하에서 금융상품거래소와 상품거래소의 상호편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㉟ J-REIT의 다양화(해외부동산의 편입)

J-REIT(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해외부동산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성에서 해외부동산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2008년 1월시행), 동경증권거래소에서 J-REIT에 대한 해외부동산의 편입과 관련된 상장규칙을 개정(2008년 5월 시행)하여 투자자 보호에 노력하는 등 필요한 환경정비에 관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㊱ 해외기업주식에 관한 국내에서의 거래기회 확대(JDR의 유통제도의 정비)

동경증권거래소 및 증권보관대체기구에 있어서의 JDR(일본판 예탁증권)의 상품내용 등에 관한 검토를 거쳐, 그 유통과 관련된 규칙개정을 실시(2008년 2월)하는 등 체제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2) 금이나 원유 등 상품가격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이 2008년 상장되었다. 동경증권거래소는 2008년 3월 상장규칙을 개정하여, 제1호로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ETF의 상장을 결정하였다. 동경증권거래소는 동경상공업거래소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적이 있는 해외 ETF 등의 상장이 진행되면, 금융·상품거래가 동경증권거래소에 일시에 집중하여 국내의 거래소가 도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일본 산케이신문, 3. 6).

㉔ 상품선물거래시장의 기능강화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품선물시장도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 농림산업성에서는 시장의 편리성 향상, 광범위한 상품구비의 실현, 시장참가자의 다양화 등 상품선물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제후를 도모하고 있다.

㉕ 프로에 한정된 거래의 다양화

제외국에서는, 영국의 AIM이나 미국의 SEC규칙 제144A에 근거한 시장 등 프로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서 고도의 자유스러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매력있는 시장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시장 간 경쟁이 진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정보공시 등에 의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생각되나,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관점에서, 프로의 투자자에 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구별하여 자기책임에 입각한 보다 고도의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고도의 자유로운 거래를 행함에 있어서 프로 투자자의 적정한 자기규율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변동 등에 의해 거래에 참가하는 프로 투자자 자신이나 그 배후의 일반 투자자 등에 대해 예상하고 있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프로의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프로로서의 책임을 가진 행동과 위험관리의 철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㉖ 적격기관투자자제도의 탄력화

새로이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적격기관투자자에게만 권유할 경우에 공시규제를 면제하는 제도(소위, 프로사모(私募))에 관해 적격기관투자자가 되기 위한 신고시기(현재 연 4회)의 탄력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내각부령을 개정하였다.³⁾

㉗ 프로를 위한 시장구조로의 정비

해외기업이나 국내의 신흥기업이 국내에서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

3) 적격기관투자자가 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기회가 지금까지는 연 2회였으나,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에 규정한 정의에 관한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에 의한 개정으로 연 4회로 되었다(정의부령 제10조 3항). 적격기관투자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3항), 즉 유가증권투자의 전문가(프로)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는 그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각종 규제적용이 면제되고 있다(다시 말해서, 각종 규제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달이나 투자운용처로서의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매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프로투자자 간의 경쟁을 통한 금융이노베이션의 촉진을 도모하는 등의 관점에서, 시장참가자를 프로에 한정된 고도의 자유로운 거래장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8년 6월 「금융상품거래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을 성립시켰으며, 공시규제가 면제되고, 거래소에 의한 자율적인 정보제공규칙에 근거하여 프로투자자에 한정하는 신시장(일명, TOKYO AIM)을 2009년 상반기에 개설할 것을 도모하고 있다.

㉔ 그린시트(green sheet) 시장⁴⁾에서의 상장폐지종목과 관련된 유통제도의 정비

상장폐지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환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시트 시장에 있는 상장폐지종목의 분리, 상장폐지종목의 지정기준의 완화, 증권보관대체기구에서의 수도결제(settlement) 업무의 취급 등에 관한 정비를 위해 일본 증권업협회 등의 검토를 거쳐 협회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㉕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일본의 금융·자본시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갖는 개인 투자자가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것은 충실한 시장형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추진하고, 개인 투자가가 위험자산에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세제정비를 도모하고 있다.⁵⁾

㉖ 금융경제교육에 관한 충실화로 금융경제의 기초 지식의 향상

금융·자본시장의 기반을 지탱하는 개인투자자의 시장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융경제에 관한 기초지식(활용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금융경제지식의 보급에 도움이 되는 교재, 팸플릿의 배포,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관계단체 등과 연대하여 금융경제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⁶⁾

4)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해, 일본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시장으로서 1997년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거래소나 점두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의 환금장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5) 2008년 세제개정에서 일정한 배당·양도이익과 관련된 경감세율의 계속 및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과 배당과의 손익통산에 관한 조치를 행함(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 상장주식 등의 배당·양도이익에 대한 경감세율(10%: 소득세 7%, 주민세 3%)을 3년간 연장.
6) 전국의 중·고등, 대학교 등 및 지방공공단체의 요구에 따라 금융청이 작성한 금융경제교육교재를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2008년, 3월·5월), 생활실계·자산운용에 관해 생각하는 심포지엄을 개최(나고야, 샌다이, 후쿠오카, 가나자와, 삿포로, 구마모토 등)하고 있다.

(나)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금융·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는 시장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다. 일본에서는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기능의 확충을 통한 금융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내외의 투자자 등으로부터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규제당국이나 시장관계자 등에게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의 위반억제책이나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 등, 법령이나 자주규제에 의한 규율에 의해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전제로 하여 시장참가에게는 고도의 자기규율이 요구되는 것이다.

㉠ 과징금제도의 개선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억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과징금 제도에 관해, ① 과징금의 금액수준의 인상(내부자거래, 발행·계속공시서류의 허위 기재 등), ② 과징금대상범위의 확대(안정조정거래 등, 공시서류의 불제출, 공개매입신고서·대량보유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불제출 등)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성립되었다(2008년 6월).

㉡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에 의한 감독이나 시장 감시체제를 보다 충실화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자주규제기능의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등의 시장감시기능체제의 강화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징금제도에 관한 개선을 포함한 시장 감시기능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의 체제정비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시장 감시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⁷⁾

㉣ 자주규제기능의 강화

금융상품·서비스가 고도화·복잡화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

7) 2008년 예산에서 정확한 과징금조사의 실시를 포함한 시장감시체제의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32명을 증원하였다.



성 향상,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금융이노베이션의 촉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서는, 자율규제가 그 자율성, 전문성, 기동성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법령에 근거한 규율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통해 자율규제기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i) 철저한 횡단적인 자율규제촉진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새로운 규제대상이 된 업자에 대해, 각 금융상품거래업 협회가 정관 등을 변경하여 자율규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율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업자에 대해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관해, 실제 등록업자의 상황을 파악, 각 협회에서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만·알선기능에 관해서는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자율규제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각 협회에서 통일적인 창구를 개설하는 등 횡단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⁸⁾

(ii) 인정투자자보호단체제도의 추진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재판 외의 분쟁처리기능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에 도입된 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불만해결·알선을 업무로 하는 민간단체를 인정하는 인정투자자보호단체제도에 관해 홍보를 도모하고, 소비자단체나 NPO법인, 각종 업계단체 등이 동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⁹⁾

(iii) 거래소의 자율규제기능의 강화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제도정비면담회에서 검토한 제재금제도의 도입 등 거래소에서의 자율규제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¹⁰⁾

◎ 회계·공시제도의 정비

회계·공시제도는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다. 그 정비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 향상이 도움이 됨과 동시에, 금

8) 일본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금융선물거래업협회, 일본증권투자고문협회 및 일본상품투자판매업협회에서 공통불만상담창구를 설치하였다(2008년 1월).

9) 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불만·알선을 업무로 하는 인정투자자보호단체로서, 생명보험협회(2007년 9월) 및 일본손해보험협회(2008년 3월)가 인정되었으며, 금융문제연락조정협회에서, 금융분야에서의 재판 외의 불만·분쟁해결지원제도(금융ADR)의 정비와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좌장 메모를 공표하였다(2008년 6월).

10) 2008년 6월, 동경증권거래소는 「상장제도총합정비프로그램 2007(제2차 실시사항)에 근거한 업무규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해」를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상장계약위약금(제재금)을 도입하였으며, 그 위약금은 유가증권상장규정 기타 규칙을 위반하여, 주주·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액은 1000만 엔이다(2008년 7월 시행).

용·자본거래나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동향과의 정합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고 있다.

(i)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수렴·상호승인추진

미국이나 EU를 중심으로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수렴을 위한 노력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회계기준의 수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고품질의 기준을 목표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EU는 제3국 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또는 동등한 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유럽위원회(EC)와 연대하여 쌍방향으로 수렴에 관한 진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본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동등성이 인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도 회계를 둘러싼 제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¹¹⁾

(ii) 영문공시대상의 확대

현재, 외국 ETF에 한정된 영문공시대상의 유가증권을 외국회사 등(외국정부, 외국펀드를 포함)이 발행하는 모든 유가증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정령 2008년 5월, 부령 6월 시행).

(iii) EDINET에 있어서의 XBRL의 도입

유가증권보고서 등 법정공시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공람하는 시스템인 EDINET에서 이용자가 재무정보의 분석·가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을 개정하였다.¹²⁾

(iv) 등급회사의 형태에 관한 검토

등급부여회사에 관해서는 최근 증권화시장을 둘러싼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등급부여회사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나 정보공시의 형태 등에 관해, 현재 IOSCO 등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논의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¹³⁾

11) 유럽위원회, 유럽증권규제당국위원회 간에 EU의 동등성 평가의 관계에서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고(2008년 1월, 3월, 5월), 기업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 등과의 정기협의를 실시하고 있다(2008년 4월, 5월).

12) XBRL 형식을 도입한 신EDINET을 2008년 3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XBRL 도입에 수반되는 양식변경 등과 관련된 재무제표 등 규칙을 개정하였다(2008년 4월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함. 2008년 6월 시행).

13) 2008년 5월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OC)에서 '신용등급부여기관의 기본행동규범'(개정판)을 발표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행동규범을 근거로 각 등급부여기관에서의 행동규범에 관한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v) 증권화상품에 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그 정보공시의 강화

증권화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권화와 관련된 개개 당사자가 원자산의 리스크에 관한 적절한 평가를 행함과 동시에,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적가능성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민간금융관계자와도 연대하여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¹⁴⁾

㉔ 코포레이트거버넌스의 강화

내외국의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자 스스로가 거버넌스 향상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준비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설명책임을 담당함과 동시에, 시장을 개설한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기 위한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i) 기업에 있어서의 내부통제의 정비

내부통제보고제도(확인서제도를 포함) 도입 후(2008년 4월), 동 제도의 리뷰를 적시에 행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내부통제의 평가 및 감사기준·실시기준의 개선이나 명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¹⁵⁾

(ii) 상장기업 등의 거버넌스 강화에 관한 검토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코포레이트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해 기업행동규범의 정비 등을 최고의 중점사항으로 한 상장제도정비방침을 공표하였다(2008년 5월).

(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적인 결제시스템의 구축

결제시스템은 금융·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며, 금융·자본시장의 국제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㉕ 자금결제시스템

자금결제시스템에 관해 2011년을 목표로 한 거대자금거래의 RTGS(총액결제시

14) 증권화상품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개정하였으며(2008년 4월 시행), 일본 증권업협회에서 증권화상품을 판매할 때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자율규제 및 증권화상품의 정보공시를 위한 통일구조를 책정하였다.

15)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보고제도에 관한 11가지의 오해'를 공표하였고(2008년 3월), 내부통제보고제도 담·조회장구를 일본공인회계사협회, 경단련과 공동으로 설치하였으며(2008년 4월), "내부통제보고제도에 관한 Q&A"의 추가 Q&A를 공표하였다(2008년 6월).

스탠)화를 위한 구조를 진행함과 동시에, 2011년에 가동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 제6차 전은행시스템에서 국제표준화나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

㉠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주권전자화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의 결제기간의 단축화를 목표로 STP¹⁶⁾화의 촉진 및 레포시장의 확대 등을 위한 시장관계자 간에 있어서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2) 금융서비스업의 활력과 경쟁을 촉진하는 비즈니스환경의 정비

(가) 은행·증권·보험 간의 방화벽 규제의 개선

이익충돌에 의한 폐해나 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그룹에 있어서의 업무의 상호보완이나 효율화에 의한 시너지 발휘를 통해, 고객편리의 향상이나 금융그룹의 통합적 내부관리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은행·증권·보험 간의 방화벽 규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규제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익충돌관리대세의 정비의무에 더하여, 은행 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증권회사에 의한 권유금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임직원의 겸직규제를 철폐함과 동시에, 법인고객에 관한 증권회사·은행 등 간의 비공개정보의 수수의 제한에 관해서 완화하는 등의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성립시켰다(2008년 6월 13일 공포).

(나) 은행·보험회사그룹의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고도화, 국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은행·보험회사그룹의 업무범위규제의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성립시켰다(2008년 6월 13일 공포). 구체적으로는, ① 재무건전성이나 정확한 리스크관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은행그룹의 은행의 형제회사에 대해 상품현물거래 등 새로운 업무를 해금하는 구조의 도입, ② 은행·보험회사 그룹에 대한 상품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현물결제의 해금, ③ 은행·보험회사 자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의 해금, ④ 은행·보험회사의 자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16) 주문에서 결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무결절(seamless)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를 포함)에 대한 이슬람금융의 해금, ⑤ 외국은행의 업무대리·매개제도의 도입, ⑥ 벤처비즈니스의 육성, 기업재생지원 등의 관점에서의 은행그룹에 대한 의결권 보유제한의 예외조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의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자유도를 제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기동적인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별운용비율규제에 관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급여력(Solvency Margin) 비율의 산출기준에 관한 검토결과를 감안하여 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라) 해외펀드매니저 유치를 위한 PE리스크의 배제

일본 금융·자본시장에서 국내펀드매니저가 해외투자자와의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관점에서, 금융청은 2008년 소득세법 등의 개정에서, 대리인 PE의 범위에서 독립대리인(항구적 시설)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독립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참고사례집 등을 공표하였다.

(3) 보다 좋은 규제환경의 실현

(가) 대화의 충실과 원칙의 공유

금융기관에서 볼 때, 행정대응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의 향상이 도움이 되고, 당국이 시장, 금융부분의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며, 또한 금융시스템이나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관민이 협동하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대화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① 원칙에 관한 관계자와의 공유를 위해, ‘금융서비스업에 있어서의 원칙’을 공표(2008년 4월), ② 원칙을 중시한 법규해석을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의 의문에 대한 답’ 등을 공표(2008년 2월), ③ 규칙기반(Rule-based)감독과 원칙기반감독의 연대를 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청은 ‘증권회사의 시장중개기능 등에 관한 면담회’의 논점정리(2006년 6월)에 따라, 일본증권업협회 등에서 12개의 자율규제규칙을 개정·책정하였다.

(나) 규제 · 감독의 투명성 · 예견가능성의 향상**㉠ 금융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등의 적절한 운용**

금융행정의 투명성 · 예견가능성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청은 2007년 비조치의견서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여, ① 조회대상법령 · 조항의 범위 확대, ② 조회 · 회답내용의 공표에 있어서 조회자의 성명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화, ③ 조회서면접수창구의 일원화 등 처리절차의 원활화, ④ 처리기간의 단축에 노력할 것 등으로 하였다. 또한 금융청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있어서의 과징금에 관한 사례집이나 감사지적사례집 등을 공표하고 있다.

㉡ 금융관련법령 등의 영역추진

해외당국 · 외국금융기관 등과의 의견교환의 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 외국어번역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금융관련 법령 등(감독지침, 검사매뉴얼, 자율규제규칙 등을 포함)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 · 금융상품거래법 · 보험업법 등 주요법률에 관해서는 2008년에 완역되었으며, 기타 외국금융기관이나 해외투자자와 관련성이 높은 법령 등에 관해서는 2009년까지 번역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촉진**㉢ 금융청 웹사이트 활용**

금융청의 시책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청의 웹사이트(일어판, 영어판)의 콘텐츠의 충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11월에는 감독지침 등의 금융규제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였고, 그러한 점을 금융기관이 주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해외용 정보발신의 강화

기자회견 · 강연회, 중요한 정책에 관한 설명을 비롯하여, 주로 외국자본계 금융기관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에 관한 보도발표 등에 관해 영어와 일본어를 활용한 보도발표를 추진하는 외에 해외언론에 대한 브리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¹⁷⁾

17) 이외에도 'EDINET 운용개선단'에 관한 중점관리를 공표하였으며(2008년 2월), 제1종 금융상품거래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경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개정하였다(2008년 4월).



◎ 규제영향분석(RIA)의 실시

금융·자본시장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법률·정령에 근거한 규제신설·개폐와 관련된 규제영향분석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

㉔ 시장동향 등의 정확한 파악과 효과적인 행정대응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내외의 금융·자본시장의 일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나 금융·자본시장의 동향이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함과 동시에 필요한 검사·감독상의 대응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i) 전향적인 행정대응을 위한 감독체제의 강화

시장관계자나 내외의 관계기관과의 대화·연계를 도모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내재하는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추출하고, 전향적인 행정대응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점적으로 행정자원을 투입하고, ② 일본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파악·분석(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이나 증권화상품 등의 보유액 등을 공표, 2007년, 2008년), ③ 일본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상황에 관한 주의 깊은 추적조사, ④ 글로벌적인 시장의 동향을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내체제를 강화(시장분석실 설치, 2008년)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ii) 중점적·기동적인 검사의 추진 등

경영진과의 대화의 충실, 금융기관의 노력 상황이나 감독정보 등의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해 경영상의 중요사항을 리스크·포커스적으로 추출·분석하여, 중점적이고 기동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행정담당주임검사관의 복수년담당제 등을 도입하는 외에, 금융검사평정의 결과도 고려하여, 특정한 리스크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춘 목표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소규모이고 업무가 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간이검사의 도입에 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융검사평정제도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적극적인 경영개선노력에 관한 면을 중시하는 등, 제도의 취지인 경영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기능이 향상되도록 운용되고 있다.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에서도 기동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관점에서 리스크에 근거한 검사계획을 책정함과 동시에, 시장을 둘러싼 문제 등과 관련된 횡단적인 테마를 선정하고, 공동과제가 있는 검사대상처에 대해 특별검사를 행하고 있으며, 앞으

로도 항상 시장동향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㉔ 직원의 자질향상

금융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금융청의 직원이 금융기술의 진전이나 시장동향에 늦장 대응이 없도록, 그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전문스태프직을 창설하는 등 직원의 전문성을 의식한 임용·육성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금융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습득을 위해 역직별(계장·과장 등)의 이론연수의 실시와 각 부국에 있어서의 연수 충실과 그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험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관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임용의 탄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시장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정비

(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법무·회계 등의 전문인재의 육성

㉑ 고도의 실천적인 금융교육의 충실화와 고도금융인재의 활용촉진

금융·자본시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금융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직 대학원 등에서의 금융교육에 관한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업계단체에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의 파견이나 인턴십에 관한 대학·대학원과의 연락창구를 개설하는 등, 문부과학성 및 업계단체의 협력을 얻어 대학·대학원에서의 고도의 실천적인 금융교육의 충실·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금융인재의 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등의 관계성청의 협력을 통해 대학·대학원, 산업계 및 금융업계의 의견교환 등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㉒ 공인회계사 시험의 개선

공인회계사 시험을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응시할 수 있고 보다 매력적인 시험으로 하기 위해,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와 2010년까지 단답식 시험 및 논술식 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해 단답식 시험을 연 2회로 함과 동시에, 단답식 시험일수를 2일에서 1일로 하며, 논술식 시험일도 평일이 아닌 주말에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㉓ 금융전문인재의 육성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발전을 담당할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중요하며, 또한 시장참가자나 당국에서의 공통적으로 법규준수감각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보다 좋은 규제환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금융청에서는, ‘금융전문인재에 관한 연구회’를 설



치하여, 금융전문인재의 육성·확보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표하였으며, 이 기본개념에 관한 공적 코멘트를 실시하였다.

㉔ **입국심사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제고**

금융·자본시장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금융이나 국제거래 등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투자·경영'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자에게 고용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받기 위한 요건(특정활동의 재류자격에 관한 법무성고시) 및 그 운용에 관해 입국관리당국에 의한 금융기관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청자의 예견가능성의 향상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일본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외국인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투자·경영'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한 금융기관에서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가사사용인을 보다 원활하게 고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검토, 개선을 하고 있다(2008년 3월).

(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도시기능향상**

금융·자본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시장 그 자체의 제도정비 등과 더불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도시 인프라를 정비하고,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법무·회계 등 주변의 전문서비스도 포함하여 다양한 시장관계자의 집적을 촉진하고, 내외의 관계자가 안전·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주권전자화를 실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으로는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에 앞서서 그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의해, 일본에서는 주권, 기타 증권의 결제과정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장래에 이를 근거로 결제기간의 단축화와 STP화의 촉진 등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개선을 위한 검토를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증권결제면에서의 국제적인 비교우위를 살려서 금융·자본시장의 매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거래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가도 기대할 부분이다.

종래의 보관대체제도에서는 상장주권을 보관대체기구에 예탁한 경우에는 매매 등의 거래를 증권회사 등의 계좌상에서 할 수 있는 한편, 주주의 선택으로 현물주권을 이용한 거래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또한 주주관리의 면에서도 보관대체기관에 예탁된 것에 주권에 관해서는 증권회사 등의 장부에서 관리되는 것에 대해, 현물주권에 관해서는 발행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에서 관리되는 등, 보관대체기관에 예탁을 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관리방법이 다르게 되었다. 이에 반해서, 주권전자화가 실시된 후의 보관대체제도하에서는 상장주식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증권회사 등이 관여하지 않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주관리의 면에서도, 주권예탁의 유무라는 구별이 없어지게 되며, 모든 상장주식이 대체기관 및 증권회사 등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의 거래나 주주의 관리에 증권회사 등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증권결제시스템에 있어서의 증권회사는 인프라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것은 증권회사 등에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업무처리체제의 구축 등을 요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투자자의 증권거래구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편리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증권업무의 전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담당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